

#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

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생활·사업장생활계)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폐기물 처리 등 준수지침을 통보하여 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자 함

## 관련 법규

### 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

#### ◇ 제21조 제1항 (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)

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·운반 방법 인력·장비·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

## 대행업자의 준수사항

### □ 대민봉사 자세

- 대행업자는 청소 행정의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대행구역 내의 폐기물을 책임지고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.
- 대행업자는 소속직원과 환경미화원이 대민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□ 적환장 등 상차장 및 장비 관리 철저

- 적환장 등 상차장에 관리인을 1인 이상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,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방역 작업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.
- 적환장의 상차장·압축기·차량 등에는 오수방지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오수가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- 폐기물 수집·운반 등 작업 종료 후에는 상차장 바닥 물청소를 실시하고 소독 약제를 뿌려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작업시간 외에는 우리구 관내 노상에 임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나 수집·운반차량 혹은 수하차 등을 둘 수 없다.
- 폐기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.

#### □ 작 업 시 간

- 대행구역의 수집·운반 요일에는 폐기물 수집·운반 작업을 준수하여야 하고, 폐기물 수집·운반 작업시간은 22:00 이후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, 다만 주간 순찰시의 적치물 수거는 예외로 한다.

#### □ 폐기물 과다 적체시

- 폐기물 처리가 허가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폐기물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□ 대행구역내의 순찰

- 대행업자는 담당구역을 아래와 같이 매일 3회 이상 순찰하여 자체 적출 사항을 처리하고, 구청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
- 조기순찰 : 06:00 ~ 08:00
- 오전순찰 : 09:00 ~ 12:00
- 오후순찰 : 13:00 ~ 16:00

- 순찰시 구 및 대행업체간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순찰조는 무선 전화기를 휴대 하는 등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- 대행업자는 일일 순찰을 실시한 후 적출 및 정비사항에 대하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## □ 잡쓰레기 등의 처리방법

- 대행업체는 쓰레기 수거작업 후의 모든 잔여물제거 등 청결한 뒷마무리를 책임진다.
- 무단투기된 폐기물은 배출자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과 함께 수집·운반한다.
- 폐기물 수거 작업 중 정일·정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등 혼합 배출한 폐기물을 발견할 시에는 배출자를 확인하여 계도하고, 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·운반한다.

## □ 부당요금(수고비) 징수자에 대한 조치

- 폐기물의 수집·운반 처리비등의 명목으로 부당요금(수고비등)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30일내에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칙 기준에 상응하는 문책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□ 정당한 행정지시 불응시 제재

- 구청장은 계약준수사항과 대행업체 준수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행정지시를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는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경고 조치 횟수가 3개월 이내 3회 이상 또는 계약 1년내 7회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 15조 규정에 의거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.

## □ 기 타

- 대행업자는 민원 및 구 행정지시 사항을 처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폐기물 수집·운반 시에는 도로·교통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을 초과한 과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대행업자는 폐기물 관계 법규가 제·개정되거나,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하는 등 필요시에는 환경미화원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.
- 이 지침은 계약과 동시에 시행한다.